

기획예산처 보도자료

보도협조일 : 2004. 7. 5(월) 조건

자료배포일 : 2004. 7. 2(금) 배포부서 : 공보관실 (☎3480-7723)

생산부서 : 재정기획실 재정정책과(☎3480-7730)

과장 홍재문(010-7195-6101), 사무관 이제훈(019-9129-5054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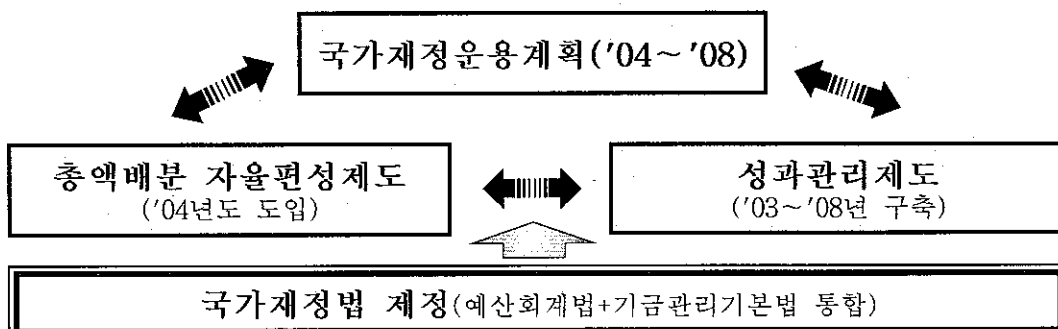
* 재정경제부 국고과(503-9281) 과장 최규연 사무관 이영주

국가재정법 제정으로 재정운영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

- 참여정부 재정개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선진국형 재정System 구축 -

정부는 재정운용의 여건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재정운용의 틀을 마련하여 재정의 효율성·건전성·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국가 재정운영의 기본법으로서 「국가재정법안」을 마련, 입법예고 하였음

- 현행 「예산회계법」은 '61년 제정 이후 기본체계가 그대로 유지되어 온 결과, 최근의 재정여건 변화에 부응하는데 한계가 있어 전면적인 개편 필요성 대두
-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는 재정운영시스템을 기존의 단년도, 투입 및 통제 위주에서 → 중장기적 시계, 성과 및 분권·자율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전환하여
- 재정의 효율성·투명성·건전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대폭 신설·보완하고
- 기존 「예산회계법」과 「기금관리기본법」을 통합·일원화하여 국가 재정운영의 기본법으로서 「국가재정법」을 제정하는 것임



☐ 국가재정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

재정운용의 효율성 도모

-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및 국회제출을 의무화
-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(Top-down) 도입근거 신설
-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해 성과관리제도 근거규정 마련
- 특별회계·기금 여유재원을 일반회계에 신축적으로 전입·활용

재정의 건전성 강화

- 매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의 수립 및 국회제출을 의무화
- 재정부담 수반 법령 제·개정시 재원조달방안 첨부 및 기획예산처와의 사전협의 의무화
- 세계잉여금의 30% 이상을 국가채무 우선 상환 의무화

재정의 투명성 제고

- 재정운용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자문기구 설치
- 예산 불법지출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시정요구권 도입
- 결산일정을 2개월 앞당겨 조기결산체계 구축

- ☐ 앞으로 입법예고(7.5(月))를 통해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법안을 보완한 후 정부안을 확정하여 금년중 입법조치가 완료되도록 추진할 계획

※ 보다 자세한 내용은 “붙임 : 국가재정법 제정요강” 참조

국가재정법 제정요강

2004. 7

재 정 경 제 부
기 획 예 산 처

I. 국가재정법 추진배경

□ 재정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재정관련 법률의 전면 개편 필요성 증대

① 참여정부의 주요 재정개혁과제*에 대한 법적 뒷받침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

* 국가재정운용계획, 예산총액배분·자율편성제도,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등

② 재정운용과정에서의 민간참여 및 정보공개 확대 요구 등을 감안하여 재정의 투명성 강화장치 마련

③ 건전재정기조의 유지와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증가한 국가 채무의 적정관리를 위해 재정 건전화 관련규정 신설

④ 그동안 명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 시행령·지침 등으로 운영 되어 왔던 재정제도들*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

* 예비타당성조사, 총사업비 관리, 출연금 지원, 기술료 사용 등

□ 재정부, 국회 등 유관기관들의 재정관련법 개편 노력에 대한 능동적 대응 필요

① 재정부가 「예산회계법」 중 국고금·국유재산 관련 조항들의 분리입법(→ 국고금관리법 및 국유재산법 개정)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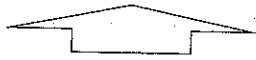
② 지난 제16대 국회에서도 재정개혁법안 제·개정 작업 추진

- '00. 12월, 의원입법으로 재정관련 3법(재정건전화법, 기금관리기본법, 예산회계법)의 제·개정을 추진하였으나 「기금관리기본법」만 개정
- '03. 8월, 「재정제도개혁특위」를 설치하여 「재정제도 개혁방안」 논의

⇒ 참여정부의 재정개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예산회계법·기금관리기본법을 발전적으로 통합하여 기본법으로 「국가재정법」을 제정

II. 국가재정법 주요내용

재정운용 여건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재정운용의 틀이 마련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·건전성·투명성 제고



효율성

건전성

투명성

재정개혁과제의
원활한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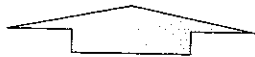
국가채무·재정수지의
적극적 관리

민간참여·정보공개의
단계적 확대

-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연동·보완
-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시행
- 성과중심의 재정운용
- 경기 자동 안정화 기능 강화 등

- 국가채무관리계획 수립
- 재정부담 수반 법령의 제·개정 제한
- 국세감면보고서 작성
- 세계잉여금의 국가채무 우선 상환
- 추경편성 제한 등

- 예산 불법지출에 대한 시민감시제도 도입
- 재정정보 공표 확대
- 조기결산체제 구축
- 예산·기금 통합관리 등



현행 재정제도들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

- 출연금, 세입세출예산외, 총액계상사업, 총사업비, 예비타당성조사, 수시배정 등

①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

【주요 개정조항】

①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및 국회제출 의무화

예산회계법	국가재정법(안)
기예처장관의 중·장기 재정운용계획 수립 가능 근거만 규정	- 매년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(2회계연도 이상) 수립 및 국회제출 의무화 - 중장기 재정전망, 재정운용목표 등 국가재정운용계획 포함내용 및 - 기예처장관의 계획 수립시 관계기관에 대한 거시경제 및 재정전망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권 등 규정

【주요 신설조항】

②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도모

- 성과 관리를 위한 기예처장관의 지침 시달 및 각 부처에 대한 성과 계획서·보고서 제출 요구권 도입
- 기예처장관의 주요 재정사업 평가 및 이를 위한 관계기관 조사·연구 위탁과 관련자료 제출요구 권한 규정

③ 예산 총액배분·자율편성제도(Top down) 도입

-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매년 12월말까지 2회계연도 이상의 중기사업계획서를 기예처장관에게 제출
- 기예처장관은 이를 토대로 중앙관서 및 기금별 지출한도를 산정하여 예산안편성지침을 통해 통보

④ 특별회계 및 기금의 여유재원을 신축적으로 활용

- 특별회계·기금의 여유재원을 당해 회계·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회계에 전입·활용 가능

② 재정의 건전성 강화

【주요 개정조항】

① 추경 편성요건 강화

예산회계법	국가재정법(안)
▪ 예산章(제2장)에서 추경편성 가능근거를 포괄적으로 규정 ▪ 「예산 성립후 생긴 이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경편성 가능」	▪ 재정건전화章(제4장)에서 추경편성 요건을 구체적으로 열거 ▪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▪ 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발생 또는 발생우려 ▪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시급한 재정 지출 필요 ▪ 법령에 의해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의 예산 성립후 발생 또는 증가

② 세계잉여금중 일정금액은 국가채무 우선 상환 의무화

예산회계법	국가재정법(안)
▪ 세계잉여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 가능 · 국채·차입금 원리금 상환 · 국가배상금	▪ 세계잉여금은 추경 편성 또는 지방교부세·교부금 정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0% 이상을 다음 각호의 채무상환에 우선 사용토록 의무화 · 국채·차입금 원리금 상환 · 국가배상금 · 기타 타법률에 의한 채무 상환

【주요 신설조항】

③ 재정부담 수반 법령의 제·개정 제한

- 재정지출·조세감면 수반 법률안(의원입법 포함) 제·개정시 5개년 재정수지 추계자료·재원조달방안 첨부 및 기예처 사전협의 의무화
- 조세감면 수반 법률안은 재경부 사전협의도 의무화

④ 국세감면 제한

- 재정부장관의 국세감면보고서(전년도 및 당년도) 국회제출 의무화
- 각 중앙관서의 장이 새로운 국세감면 요청시 재정부장관에게 기존 국세감면 축소 또는 폐지방안 제출 의무화

⑤ 국가채무 관리 강화

- 매년 재정경제부장관의 국채·차입금 상환실적 및 상환계획, 증감 전망 등을 포함하는 국가채무관리계획 수립 및 국회제출 의무화

⑥ 지자체의 재정건전화 도모

- 행자부장관은 매년 재경부·기예처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방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할 의무
- 행자부장관은 지자체의 재정건전화노력을 평가하여 특별교부세 일부를 차등 지급 가능

③ 재정의 투명성 제고

【주요 개정조항】

① 편성·결산절차가 유사한 예산·기금의 통합 관리

예산회계법 / 기금관리기본법	국가재정법(안)
▪ 국가의 회계를 일반회계·특별회계로 구분 ▪ 기금관리기본법을 통해 기금의 운용 계획 수립 및 결산절차를 별도 규정	▪ 국가의 회계를 일반회계·특별회계·기금으로 구분 ▪ 기금도 예산의 개념으로 일원화하여 제2장(예산) 및 제3장(결산) 관련 규정을 공통 적용

② 결산일정을 2개월 단축한 조기결산체제 구축

	예산회계법	국가재정법(안)
▪ 결산보고서 작성·제출 (각부처 → 재경부)	다음연도 2월말	다음연도 2월말
▪ 정부결산 제출 (재경부 → 기예처, 감사원)	다음연도 6.10일	다음연도 4.20일
▪ 결산검사 보고서 송부 (감사원 → 재경부)	다음연도 8.20일	다음연도 6.10일
▪ 정부결산 국회제출	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	다음연도 6.30일

【주요 신설조항】

③ 재정운용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의견수렴 확대

- 재경부장관과 기예처장관은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의 설치·운영 가능

④ 위법·부당 행위 시정 및 제도개선 요구권 규정

- 재경부·기예처 장관은 위법·부당한 예산집행상황 발견시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시정 또는 제도개선 요구 가능

⑤ 예산 불법지출에 대한 시민감시제도 도입

- 예산 집행자·재정지원 수혜자·중앙관서 계약 거래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국가손실을 초래한 경우 누구든지 책임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 요구 가능

4 재정제도의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

【주요 신설조항】

① 출연금 지급

- 연구개발사업 수행 등 특정목적 달성을 위해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출연 가능

② 기술료 사용

- 출연금이 지원된 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대가를 기예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세입세출예산외로 사용 가능

③ 총액계상 사업

- 세부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업은 총액예산 계상이 가능 하되, 총액계상사업의 총규모는 예산순계의 일정비율 초과 금지

④ 예비타당성조사

-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 예산편성전에 기예처장관의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의무화

⑤ 대규모 개발사업 예산의 단계별 편성

-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은 타당성조사, 기본설계비, 실시설계비, 보상비, 공사비 순서에 따라 단계별로 예산 편성

⑥ 수시배정, 배정유보, 배정예산 집행보류

-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업계획의 검토결과에 따라 예산배정 가능
- 예산집행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배정 유보 및 배정된 예산 집행보류도 가능

⑦ 총사업비 관리

- 완성에 2년 이상을 요하는 대규모사업의 사업규모, 총사업비, 사업기간을 결정·변경하는 경우 기예처장관과의 협의 의무화